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12
----------	-------

발의연월일 : 2025. 7. 10.

발 의 자 : 전현희 · 강준현 · 박홍배
김동아 · 윤종균 · 이학영
홍기원 · 황정아 · 정태호
김영환 · 추미애 · 박주민
장경태 · 남인순 · 민병덕
한준호 · 문진석 · 김용만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직무감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지키지 않으며 편향된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감사원은 상시 공직감찰을 이유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해 감사 지연 또는 감사결과 축소, 졸속 의결 등 상황에 따라 내부 지침을 변경해가며 편향된 표적 감사를 해왔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당사자의 형식적 동의를 근거로 무분별한 포렌식을 일삼아왔음.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개인정보가 집약되어 있는 디지털정보매체를 포괄적으로 포렌식함으로써, 감사범위를 초과

한 자료추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당사자는 감사방해의 처벌을 우려하여 동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감사원이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두고 있던 감사의 기본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여 구속력을 강화하고, 그동안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하여 온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당사자의 동의권을 실질화하여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를 제한하고, 위법하게 감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을 “감찰개시,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이미 의결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제2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에 관한 사항

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감찰 사후승인에 관한 사항

7의2. 제35조에 따른 고발에 관한 사항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의결의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비공개 의결사항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감찰담당관의 임용 등) ① 감사원은 내부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원장 직속으로 감찰관을 둔다.

② 감찰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감찰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위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④ 감찰관의 구체적인 처우, 모집 및 임용절차 등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장제1절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감사의 기본원칙)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2.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3. 법령과 조리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
5. 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제2장제3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감찰의 개시 및 수행) ①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찰을 개시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감찰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감찰을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찰개시 직후 감사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각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자체감사(自體監査)를 수행한 후 해당 기관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자체감사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제1호의 기관의 자체감사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석·답변의 요구를 받은 자는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원에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디지털 자료의 추출 등) ① 감사원이 디지털정보저장매체에서 자료를 추출하는 경우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기간 및 키워드 검색 등의 방법으로 선별하여 출력·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자료를 추출할 때 사전에 디지털정보저장매체의 관리자, 제출자 또는 소유자 등(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디지털 자료의 탐색·추출, 복제본 생성·획득 등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대한 동의를 얻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제2항에 따라 디지털정보저장매체에서 디지털 자료를 추출한 후 해당 디지털정보저장매체를 관리자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감사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추출하려는 매체가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 등 개인정보가 집약된 디지털정보저장매체인 경우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선별 추출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정보저장매체의 관리자등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제5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3(변호사의 참여)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석·답변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감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사를 참여하게 하여

야 한다.

제27조의4(감사 절차 등에 대한 이의신청)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 절차, 감사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장은 감사 절차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확인하여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중 “이를”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이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2. 제27조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3. 제27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지 아니하고 출력·복제한 자
4.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자등에게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해당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디지털 자료를 추출한 자

5.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디지털 자료를 추출한 디지털정보저장매체를 관리자등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찰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위원회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7조제6항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디지털 자료를 추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감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2조(의결사항) ① ----- ----- -----.
1. 감사원의 <u>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u>	1. ----- <u>감찰개시,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이미 의결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u><신 설></u>	<u>1의2.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에 관한 사항</u>
2. (생 략) <u><신 설></u>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감찰 사후승인에 관한 사항</u>
3. ~ 7. (생 략) <u><신 설></u>	3. ~ 7. (현행과 같음) <u>7의2. 제35조에 따른 고발에 관한 사항</u>
8. ~ 16. (생 략) ② (생 략) <u><신 설></u>	8. ~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12조의3(의결의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사</u>

<신 설>

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비공개 의결사항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4(감찰관의 임용 등) ①

감사원은 내부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원장 직속으로 감찰관을 둔다.

② 감찰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감찰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위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④ 감찰관의 구체적인 처우, 모집 및 임용절차 등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직원의 임용) ① ~ ③
(생략)

④ 감사원 소속 직원의 인사사무감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하고, 감사 결과는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제18조(직원의 임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20조의2(감사의 기본원칙)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2.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3. 법령과 조리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
5. 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 기관과

<신 설>

관계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제24조의2(감찰의 개시 및 수행)

①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찰을 개시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감찰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감찰을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찰개시 직후 감사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각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자체감사(自體監査)를 수행한 후 해당 기관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
인 등) ① ~ ⑤ (생략)
<신설>

<신설>

및 공공기관에서 자체감사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
된 사항으로 제1호의 기관의
자체감사로는 공정성을 인정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
인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석·
답변의 요구를 받은 자는 본인
이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
원에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그 신청에 응하여
야 한다.

제27조의2(디지털 자료의 추출
등) ① 감사원이 디지털정보저
장매체에서 자료를 추출하는
경우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에 그쳐야 하고 기간 및 키워
드 검색 등의 방법으로 선별하
여 출력·복제하여야 한다. 다
만,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디
지탈 자료를 추출할 때 사전에

디지털정보저장매체의 관리자, 제출자 또는 소유자 등(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디지털 자료의 탐색·추출, 복제본 생성·획득 등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대한 동의를 얻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제2항에 따라 디지털정보저장매체에서 디지털 자료를 추출한 후 해당 디지털정보저장매체를 관리자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감사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추출하려는 매체가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 등 개인정보가 집약된 디지털정보저장매체인 경우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선별 추출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정보저장매체의 관리자등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제5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7조의3(변호사의 참여) 제27조

<신 설>

제35조(고발)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
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1조(벌칙) ① (생 략)
②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석·답변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감사과
정에서 변호사의 참여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사
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의4(감사 절차 등에 대한
이의신청) 감사대상 기관은 감
사 절차, 감사 방법 등에 대하
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
장은 감사 절차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확인하여 신청한 내
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신청
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
여야 한다.

제35조(고발) -----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이를
-----. 이 경우 수사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51조(벌칙) ① (헌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생 략)	<u>에 처한다.</u> <u>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u> <u>2. 제27조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u> <u>3. 제27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지 아니하고 출력·복제한 자</u> <u>4.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자등에게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해당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디지털 자료를 추출한 자</u> <u>5.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디지털 자료를 추출한 디지털 정보저장매체를 관리자등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자</u> ③ (현행과 같음)
----------------	--